

의안 번호	1545	[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9. 5. 3.(수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5. 22.(수)

2. 제안이유

- 가. 이 조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
- 나.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법령등과의 관계(안 제1조~안 제4조)
- 나. 빈집정비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빈집의 확보를 위한 사항 (안 제5조~안 제7조)
- 다. 빈집 정비의 방법, 지원, 활용(안 제8조~안 제10조)
- 라. 홍보, 지도감독, 자료 확인 요청, 준용(안 제11조~안 제15조)

4. 근거법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방치된 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큰 거 법 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(이하 "빈집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2.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3.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
4.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

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(이하 "빈집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 결과
2.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
3.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·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·기준 및 내용
4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등"이라 한다)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